

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 인 호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은 매년 8월 14일을 ‘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’로 정하여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
-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‘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’에 관한 행사와 홍보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「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 시장이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
- 또한 조문 내 상위법을 효율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안을 추가 하였사오니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